

울산광역시 동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1685호 2026. 8. 31.(월)

입법예고

-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
입법예고 1

안 내	○ 동구 전자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(정기)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수요일 오전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동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동구 홈페이지(www.donggu.ulsan.kr) → 동구소식 → 고시/공고 → 동구공보							
	회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 동구

편집 : 기획예산실(☎ 209-3047, 행정 3047)

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2026-863호

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 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8월 31일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

1. 제정(개정)이유

- 옥외광고물 수수료의 반환 및 감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, 수수료 부과징수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조례」 제28조(수수료) 개정
 -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
 - 공공목적 광고물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
- 현행 조례상 이탈자 등 미비점 정비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

-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-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(참조 : 도시과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주소 :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(화정동), 동구청 도시과
- 2) 팩스번호 : 052) 209-3897
- 3) 전자우편(E-mail) : mmd33010@korea.kr

6. 참고사항

조례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(www.donggu.ulsan.kr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서

조 례 명	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			
의견제출자	성명/단체명		전화번호	
	주 소			
조례안 조문	검토의견(의견제출 내용)			

「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제출자

(서명)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

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6호 중 “영 제5호제1항제5호”를 “영 제5조제1항제5호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행정절차법”을 “「행정절차법」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”을 “고시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”을 “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안전점검”을 “안전점검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“안전점검”을 “안전점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허가”를 “허가가”로 한다.

제27조제5항 중 “별지 13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3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집행비용”을 “집행비용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울산광역시 동구의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
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에”를 “제1항에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
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) ①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(이하 “광고물등”이라 한다)을 표시 또는 설치(이하 “표시”라 한다)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,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 다만,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·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은 제외한다.	제2조(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영 제5호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	6. 영 제5조제1항제5호----- ----- -----
7. (생략)	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) ① (생략)	제12조(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

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

2. · 3. (생략)

제18조(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)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안전점검 업무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~ ⑥ (생략)

제19조(안전점검의 절차 및 위탁받은 자의 업무처리 요령 등)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해야 하며,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. 다만, 그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②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른

③ ----- 고시하는 -----
-----.

1.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-----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) ① -----
----- 안전점검 -----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안전점검의 절차 및 위탁받은 자의 업무처리 요령 등) ① -----
----- 안전점검 -----

-----.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, 불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알리고 법 제10조에 따라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27조(교육의 위탁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13호서식의 교육 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,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 수료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.

⑥ (생략)

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 실시 결과,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비용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.

제28조(수수료) ① (생략)

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해야 하며,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.

⑤ -----

----- 허가가 -----

-----.

제27조(교육의 위탁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 별지 제13호서식 -----
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 집행비용 -----
-----.

제28조(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· 2. (생 략)

<신 설>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 략)

<신 설>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울산광역시 동구의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

③ ----- 제1항에도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